

방문판매업 휴업
 전화권유판매업 폐업 신고서
 영업재개 영업재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고인	상호	신고번호
	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의 성명	

(서명 또는 인)

신고 항목	기간	부터	까지
	휴업		
	폐업		
	영업재개		

사유	
----	--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(휴업 폐업 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) ※ 신고증을 분실·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[신고증 분실·훼손 사유]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